정　　관

학교법인 민송학원

학교법인 민송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07.01, 2016.11.01 개정)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민송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대원전문대학 (교명은 '대원대학교'이라 한다)(2008.12.17, 2011.11.22 개정)
2. 성희여자고등학교

제3조의1 (2016.11.01 삭제)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산 22번지의 8호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8.01.24, 2008.04.08 개정)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2008.01.24 개정)
③보통재산은 제 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한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의2 (예산·결산의 공개)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2007. 2. 15 삭제)

제13조~제17조(2007. 2. 15,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2007. 2. 15 개정)

1. 이사 8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②제1항의 이사 중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2007.02.15, 2008.01.24 개정)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감사 3년(추천감사 포함,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007.02.15 개정)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2007.02.15 개정)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08.04.08 개정)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립자의 창학이념 및 설치경영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2007.02.15 신설)

제20조의3 (개방이사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추천하여야 한다.(2007.02.15 신설, 2008.04.08 개정)

②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선임대상 인원의 2배수를, 개방감사는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이사장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2007.02.15 신설, 2008.04.08 개정)

③설치학교 학운위 및 평의원회에서는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운위 또는 평의원회 규정으로 정한다.(2007.02.15 신설)

제20조의4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2008.04.08 개정)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2008.04.08 2항 개정)

③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⑥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2007.02.15 조문신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02.15 개정)

③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단,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02.15 개정)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가 단수 추천한 자로 하고 감사추천 등에 관하여서는 제20조의 4의 조항을 준용한다.(2007.02.15 신설, 2008.04.08 개정)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2007.02.15 신설)

1. 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 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법 제5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2008.01.24 항 삭제)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 사 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장을 겸 할 수 없다.(2007.02.15 신설, 2008.01.24 개정)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2007.02.15 개정)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직원을 포함한다) 을 겸할 수 없다.(2007.02.15 개정)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의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2007.02.15 개정)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7.02.15 개정)

③이사회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2.05.15 항 신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7.02.15 개정)

제31조의2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 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법인은 이사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02.08. 개정)

④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2007.02.15 조문 신설, 2008.04.08, 2016.01.01 조문 개정)

제 4 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3. 기타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민송학원 사업소를 경영한다.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산 22번지 8호에 둔다.

제35조 (관리인) ①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8.04.08 개정)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2008.04.08 개정)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04.08 개정)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39조 (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원대학교 총장은 중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65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성희여자고등학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2007.02.15.,2008.01.24.,2018.09.01.,2019.01.01. 개정)
②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면직한다.(2008.04.08.,2019.01.01. 개정)
③(정년보장 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전임교원 정원의 20%이내로 한다.
④ 대원대학교의 부총장, 교무학생처장, 입학홍보처장, 취업지원처장, 정책기획단장, 부속기관장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2년 이내의 임기로 연임 할 수 있으며, 성희여자고등학교의 교감은 3년 이내의 임기로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연임 할 수 있다.(2007.02.15,

2007.05.08., 2009.07.06, 2014.02.07., 2016.01.01., 2019.01.01., 2019.03.01., 2021.02.08. 개정)

⑤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2019.01.01. 개정)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19.01.01. 개정)

⑦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2014.02.07 항 신설)

⑧제1항과 제4항에 의해 임기가 종료한 교원중 교육공무원법상 정년 이전인 교원은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2019.01.01. 항 신설)

제39조의2 (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보장.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로 임용되는 경우(현재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2009.07.06 개정)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전임강사 : (삭제, 2012. 07. 22부 시행, 2012.08.29 개정)

마. 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2019.08.01. 신설)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2009.07.06 삭제)

③강사·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강사·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임용·신분보장·보수 등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19.08.01. 신설)

제39조의3 (신규채용등) ①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해 누적 채용인원을 기준으로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인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적용한다.(2009.07.06 개정)

③전문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본 법인의 임·직원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⑤이사장은 전문대학 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 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2009.07.06 개정)

⑥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⑧임용권자는 교원(학교장 제외)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임용시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을 명시하여 학교의 장에게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사항이 만료된 때에는 위임권한이 소멸된다.(2008.01.24 항 신설)

제39조의4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 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종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경우의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교수 : 정년보장

2. 부교수 : 7년

3. 조교수 : 6년(2012.07.22부 시행, 2012.08.29 개정)

4. 전임강사 : (삭제, 2012. 07. 22부 시행, 2012.08.29 개정)

②이사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 종료일 2월 전까지 해당 대학 교원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2007.05.08개정)

⑥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⑦이사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대학의 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39조의5 (기간제교원) ①교원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 40조의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을 청구하여 후 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제 40조, 제 44조, 제 46조, 제 56조, 제 59조, 제59조의2, 제 59조의 3, 제 60조 내지 제 62조, 제 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의6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2012.08.29 삭제)

제39조의7 (공개전형 및 전형결과의 공개) ①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을 신규채용시 공개전형을 하여야 한다.

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 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2007.02.15 조 신설)

제39조의8 (당연퇴직) 교원(학교의 장 포함)이「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2012.08.29 신설)

제 2 관 신분보장

제4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 1호 내지 제 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2016.01.01 개정)

7. 자녀(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2008.01.24, 2016.07.01 개정)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2008.04.08 개정)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 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위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2008.04.08., 2018.09.01. 개정)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9. 제4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4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0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④휴직예정자는 휴직신청시 행정 및 학사업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40조제3호와 제9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휴직예정일 30일 전에 임면권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2008.04.08 신설)

제4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0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의 휴직기간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해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06.28.,2019.08.01.개정)

②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13.06.28.,2018.09.01.,2019.08.01.개정)

③(2018.09.01. 삭제)

④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가 제42조 ②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면권자에게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2008.04.08 신설, 2013.06.28., 2018.09.01. 개정)

⑤임면권자는 ④항의 요청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과에 따른다.(2008.04.08 신설, 2013.06.28 개정)

제43조의2 (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8.04.08 조 신설)

제43조의3 (병가시 교원의 신분) ①병가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병가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기관에 사유를 첨부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8.04.08 조 신설)

제43조의4 (병가시 교원의 처우) ①제4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병가중인 교원에게는 봉급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2012.05.15 개정)

②소속기관장은 병가자가 제43조3 제2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조치를 취한 후 임면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04.08 조 신설)

제44조 (직위해제 및 면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제1항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교원은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⑦제1항제2호와 3호에 해당하는 직위해제의 사유중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와 제1항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를 받아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간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한다.

⑧면직은 사립학교법에 의한다. (2019.01.01., 2019.03.01. 개정)

제4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위원회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2008.04.08 개정)

④대학교육기관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본문 중 '교원'을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징계처분'을 '임용계약으로 정한 사유'로 본다.(2019.08.01. 신설)

제46조의2 (정년) ①교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석좌교수의 정년은 67세로 한다. (2019.08.01. 개정)

②제1항에 의한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6조의3 (명예퇴직) ① 대원대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중이며 근무일수가 정년까지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 명예퇴직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명예퇴직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2016.01.01., 2016.07.01., 2021.02.08.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격 부여 기준과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지급, 수당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다만,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2018.09.01., 2021.02.08.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중 학교의 장(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임기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2018.09.01. 신설)

제46조의4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6조의5 (우수교원의 특별승진) 법인의 학교에 근무하는 우수교원의 특별승진은 명예퇴직시 교육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4호에 의한다.(2016.01.01 개정)

제46조의6 (원로교사의 임명) (2011.02.11 신설)

①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정년 전까지 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 임용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교장은 임기만료 60일전에 "교사임용희망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대학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007.06.21.,2008.02.04.,2016.01.01.,2019.08.01. 개정)
2. 전문대학의 장이 부총장, 교무학생처장, 입학홍보처장, 취업지원처장, 정책기획단장 등의 보직을 보하고자 할 때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2007.02.15, 2007.05.08, 2009.07.06., 2016.01.01., 2021.02.08. 개정)
3. 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과 연수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전문대학의 장이 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때 그 동의에 관한 사항(2019.08.01., 2021.02.08. 개정)

②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2019.08.01. 개정)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2018.09.01. 신설)

제49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직원으로 조직한다.(2007.02.15 개정)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무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2007.05.08., 2016.01.01., 2021.02.08. 개정)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제55조의1(교원의 징계) ①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등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2022.05.01.신설)

②교원징계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2022.05.01.신설)

제5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임명과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2007.02.15., 2022.05.01.개정)

③교원징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따른다. (2022.05.01.신설)

제57조 삭제(2022.05.01.개정)

제58조 삭제(2022.05.01.개정)
제59조 삭제(2022.05.01.개정)
제59조의2 삭제(2022.05.01.개정)
제59조의3 삭제(2022.05.01.개정)
제60조 삭제(2022.05.01.개정)
제61조 삭제(2022.05.01.개정)
제62조 삭제(2022.05.01.개정)
제62조의2 삭제(2022.05.01.개정)
제6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 사 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삭제)

제65조 내지 78조 (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79조 (자격) ①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 이라 한다.)은 일반직과 기술직, 계약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할 수 없다.(2012.05.15 개정)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에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기간 중에 있는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계약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0조 (임용과 면직)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면” 이라 한다) 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

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0조의2 (대우직원 선발) ①이사장은 학교소속 일반직 직원 중 총 경력 및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력요건에 도달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2014.02.07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직원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2014.02.07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직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2014.02.07 개정)

제80조의3 (근속승진) ①이사장은 학교소속 일반직 직원중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 당해직급에서 근속승진기간 이상을 재직한 자를 근속승진 할 수 있다(2015.04.01.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2015.04.01. 개정).

③제1항의 근속승진 대상, 범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2015.04.01.신설).

제80조의4 (성희여자고등학교 명예퇴직) ①사무직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예정일 현재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할 수 있다(2015.04.01.신설).

②제1항의 명예퇴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규정을 준용한다(2015.04.01.신설).

제80조의5 (사무직원 명예퇴직)①법인사무국과 대원대학교 사무직원으로서 15년 이상 재직중이며 근무일수가 정년까지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 명예퇴직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2018.09.01., 2021.02.08.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격 부여 기준과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지급, 수당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2018.09.01., 2021.02.08.개정)

제81조 (복무) ①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과 정관 제6장 제1절“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2008.01.24.개정)

②성희여자고등학교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2015.04.01.신설)

제82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 (신분보장) ①일반직원의 정년을 제외한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성희여자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2015.04.01.신설)

제83조의2 (정년) ①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말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2013.06.28 개정)
②성희여자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2018.09.01. 신설)
③장기근속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 및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7급 이상 사무직원으로,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6개월인 자를 공로연수 시행한다.(2022.09.01. 개정)

제84조 (일반직원의 징계) ①직원징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2022.05.01.개정)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는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2022.05.01.개정)
③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해 정관에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또는 교원징계 관계 법규 또는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2022.05.01.신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5조 (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 장 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사무국에는 총무과, 경리과 및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전문대학

제86조 (총장 등) ① 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2016.01.01 개정)
③전문대학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 및 참여로 겸보한다.(2012.05.15 개정)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총장이 궐위 또는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명하는 자로 한다. (2007.02.15, 2009.07.06 조문개정)

제87조 (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교무학생처, 기획처, 입학홍보처, 취업지원처, 사무처를 둔다.(2005.02.15., 2007.05.08., 2014.09.15., 2016.01.01., 2019.05.01., 2020.02.10., 2022.09.01. 개정)
②교무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홍보처장, 취업지원처장은 조교수이상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부참사 이상으로 겸보 할 수 있다.(2007.02.15., 2007.05.08., 2014.09.15., 2016.01.01., 2020.02.10., 2022.09.01. 개정)
③교무학생처에는 교무팀, 학생팀, 교육과정혁신센터, 교수학습혁신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생활·인권상담센터, 사회봉사센터를 두며 각 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주사 이상으로 보한다.(2007.05.08., 2014.09.15., 2016.01.01., 2019.05.01., 2020.02.10., 2022.09.01. 개정)

④사무처에는 사무팀을 두며 팀장은 부주사 이상으로 보한다.(2005.02.15., 2007.05.08., 2014.09.15., 2016.01.01., 2018.09.01., 2020.02.10., 2022.09.01. 개정)

⑤입학홍보처에는 입학홍보팀, 국제교류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주사 이상으로 보한다.(2007.05.08., 2014.09.15.,2020.02.10. 개정)

⑥취업지원처에는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취업정보실을 두며 팀장 및 센터(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주사 이상으로 보한다. (2007.05.08., 2014.09.15., 2016.01.01., 2016.07.01., 2019.05.01., 2020.02.10., 2022.09.01. 개정)

⑦기획처에는 기획팀, 성과관리센터를 두며 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주사 이상으로 보한다.(2016.01.01., 2018.09.01., 2020.02.10., 2021.02.08., 2022.09.01 개정)

⑧삭제(2022.09.01. 개정)

⑨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2016.01.01., 2019.05.01. 개정)

제87조2 (산학협력단) ①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산학협력단 정관을 별도 작성 운영한다.

③산학협력단 단장은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05.02.15 개정)

④산학협력단에 사회복지사업법등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2009.07.06 신설)

제88조 (부속시설) ①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이상으로 보한다.(2014.09.15. 개정)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2009.07.06 개정)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89조 (도서관) (2020.02.10. 삭제)

제 3 절 고등학교

제90조 (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정 원

제92조 (정원) 법인 및 각 학급 학교의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내지 **별표4**와 같다.(2011.02.28개정)

제 8 장 위 원 회

제 1 절 학교운영위원회

제9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적인 교육을 위하여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9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 기준에 의거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5조 (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교원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하고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5.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2005.02.15 신설)
6.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1. 교복, 수학여행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의 자문요청이 있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제97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교원위원의 자격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수 없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 (규정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99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우리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성희여자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00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①조정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 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직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등의 보호자가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보 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 학부모, 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가 학생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1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학부모·지역 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02조 (위원장)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3조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성실히 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5조 (회의개최) ①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개최 한다.

②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회의 소집통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 할 수 없다.

제107조(심의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등 기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는 분쟁사안중 학생에 대한 폭력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8조 (간사) 조정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09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 (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정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대학평의원회(2005. 2. 15 장 신설)

제111조 (대학평의원회 설치) 전문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2조 (평의원회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과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전문대학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3인-전임교원 이상(2008.01.24, 2008.04.08 개정)
2. 직원 3인-사무직원 중 10년 이상 근속자(2008.01.24, 2008.04.08 개정)
3. 학생 1인-학생자치기구 대표자-총학생회장(2008.01.24, 2008.04.08 개정)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자 3인(2008.04.08 개정)

5.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자 1인(2008.04.08 개정)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제 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3조 (평의원 위촉) 평의원 위촉은 평의원회 각각의 구성단위별 단체나 또는 단체의 대표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촉한다.

제114조 (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15조 (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112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②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6조 (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전문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전문대학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 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7조 (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정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대학의 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118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1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20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이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김형순	1942. 9. 28	5년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46-106번지
이 사	권영우	1942. 3. 1	5년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46-106번지
이 사	김채호	1926.11.10	5년	경북 안동시 화성동 118-7번지
이 사	권삼석	1936.12.20	2.5년	경북 안동군 남선면 원림동 439번지
이 사	백성학	1942.11. 8	2.5년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5-1 번지
이 사	류순자	1944.10.16	2.5년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삼호APT 5-301
감 사	김중권	1939.11.25	1년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165번지
감 사	곽창근	1939. 6.25	2년	서울시 동대문구 상봉동 125-26번지

제121조 (사학기관 행동강령) 이 법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2022.05.01.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 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직 10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기능직 10등급이 이 정관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능직 10등급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기능직 10등급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월 9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 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원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대원공과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무과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고등학교의 서무과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정실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정관에 따라 각 부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임시교원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가 끝나는 때까지 종전의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정원에 초과하여 근무 중인 일반직원은 이 정관의 정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위원정수의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규교원의 계약제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39조의2및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계약제 임용은 2002년 3월 1일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③(채용신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 3의 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④(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 3의 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200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200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기선임 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 하여 유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200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일(2007년 2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이 시행당시 선출된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변경 전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일(2007년 5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일(2008년 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일(2008년 4월 08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가. 이 정관 시행당시 선임된 “대학평의원회” 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기 선임된 임기만료일까지 유지한다. 다만, 추천위원회 위원 중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거쳐 개정정관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조정한다.

나. 이 정관 시행당시 휴직중인 교원 또는 직원은 휴직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원과학대학” 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변경승인된 정관에 따라 “대원대학” 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의 장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원대학의 학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원대학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 또한 잔여임기를 유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정의 허가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허가일(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원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변경승인된 정관에 따라 ‘대원대학교’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 중 제43조의 4(병가시 교원의 처우)는 2012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개정조문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2012년 3월 1일부로 적용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개정정관 시행에 따라 시행일전에 법인 및 대원대학교 각 행정 부서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직원은 개정정관에 따라 대원대학교 각 행정부서와 개정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 중 제39조의2와 제39조의4는 고등교육법 개정시행일에 띠라 2012년 7월 22일부로 시행하고 기타 조문은 허가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개정정관 시행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전임강사는 개정 정관에 따라 2012년 7월 22일부로 조교수로 직급전환 임용되어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정관개정 승인일(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제44조는 정관개정 승인일 이후부터 휴직하는 교직원부터 적용 시행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정관개정 승인일(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가. 이 정관 제39조 개정시점에 임명되어 있는 성희여자고등학교 교감의 임기는 2016년2월28일자로 하고 연임의 경우는 변경된 정관의 적용을 받는다.
나. 일반직원에 대하여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개정정관 시행에 따라 시행일전에 법인 및 산하기관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직원은 개정정관에 따라 법인 및 산하기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구 분		인 원(명)	비 고
일반직	2급(참여)	1	
	3급(부참여)	1	
	4급(참사)	1	
	5급(부참사)	1	
	6급(주사)	1	
	7급(부주사)	1	
	8급(서기)	2	
	9급(부서기)	3	
	계	11	
합 계		11	

(별표2)

【대원대학교 직원 정원】

구 분		인 원(명)	비 고
일반직	2급(참여)	1	
	3급(부참여)	1	
	4급(참사)	2	
	5급(부참사)	10	
	5급(연봉계약직)	4	
	6급(주사)	10	
	6급(연봉계약직)	6	
	7급(부주사)	10	
	7급(연봉계약직)	6	
	8급(서기)	10	
	8급(연봉계약직)	15	
	9급(부서기)	5	
	9급(연봉계약직)	15	
	계	95	
기술직	5급(부참사)	2	
	6급(사서, 전산기사)	2	
	7급(부사서, 전산부기사)	3	
	8급(사서보, 전산기사보)	3	
	9급(사서보, 전산기사보)	3	
	9급(연봉계약직)	5	
	계	18	
합 계		113	

(별표3)

【성희여자고등학교 직원 정원】

구 분		인 원(명)	비 고
일반직	6급(주사)	1	※경상북도교육청「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8급(서기)	2	
시설관리	8급(시설서기)	1	※공로 연수로 인한 결원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
	계	4	
총 계		128	법인+ 대원대학+ 성희여고